

#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

(www.mtrace.net, 쇠고기이력.com)

소비홍보팀 팀장 이원복

## 1.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(Traceability)이란?

- 소의 생산·도축·가공·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·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임
-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 등을 장착하여 출생·이동 및 도축단계 까지 신고내용을 DB화하여 관리
  -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
- 도축단계 이후는 식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
  -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촉진
  - 도축장에서 DNA검사용 샘플을 채취·보관하여 유통되는 식육과 대조 확인검사

- 관심을 보이는 브랜드경영체 및 유통업체 등에 정부 가이드라인 설명('04.6.16)

- DNA동일성검사 체계 준비
  - 전문인력 채용 및 전문 기술교육 실시('04.8월초)
  - 축산연구소와 DNA동일성검사 기술 이전 협약 체결('04.9.15)

- 시범사업 참여브랜드 선정
  - 시·도로부터 23개 브랜드를 추천 받아 우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9개 브랜드경영체를 선정('04.7.28)

- 전산시스템 구축
  - 전산시스템 개발 착수('04.9월)
  -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('04.9.20)
    - www.mtrace.net
    - 쇠고기이력.com

- 시범사업 출범 및 홈페이지 우선 개설('04.10.1)
  - 귀표부착 및 전산입력 착수

## 2. 추진경과

- 기본방침 수립
  - 전문가중심의 TF구성 및 외국 사례조사('04.1~2월)
  -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달('04.5.27)
- 사업홍보 및 설명회 개최
  - 세미나 및 심포지움 등을 통해 학계와 전문가 의견수렴('04.6~7월)

## 3. 필요성

-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로 국내 소 산업 발전에 기여
  -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,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

-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
  - 광우병 등 각종 질병 발생시 환축의 이력을 추적 또는 소급하여 동거 소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
- 가축개량, 경영개선 등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
  - 소의 혈통, 산유능력, 사양관리 정보 등을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·활용할 수 있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

#### 4. 시범사업 추진

##### 가. 기본방향

- 광우병 등 문제발생시 전면 도입을 위한 추적시스템 구축
  - 생산·도축·가공·판매단계까지의 이동 사항을 기록관리
  - 사양관리 및 위생·안전성 관련 정보는 브랜드경영체 등이 선택적으로 기록관리 및 제공
- 농가의 기록관리 및 자율 신고의식이 미흡하고, 비용이 많이 들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정착
  -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실시기반 정비
  - 우선 우수 브랜드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로 확대
-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·평가하여 법령제정 등 전면 실시에 대비한 제도를 사전에 완비('08년까지)

##### 나.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

- 현행 귀표장착 사업은 모두 단일 번호체계로 관리
  - 대상 사업(5개) : 송야지생산안정제, 한우개량농가육성, 가축공제, 종축등록, 젖소능력검정 사업 등
  - 개체식별번호 부여, DB구축 및 정보관리 등을

이력 추적시스템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단일 시스템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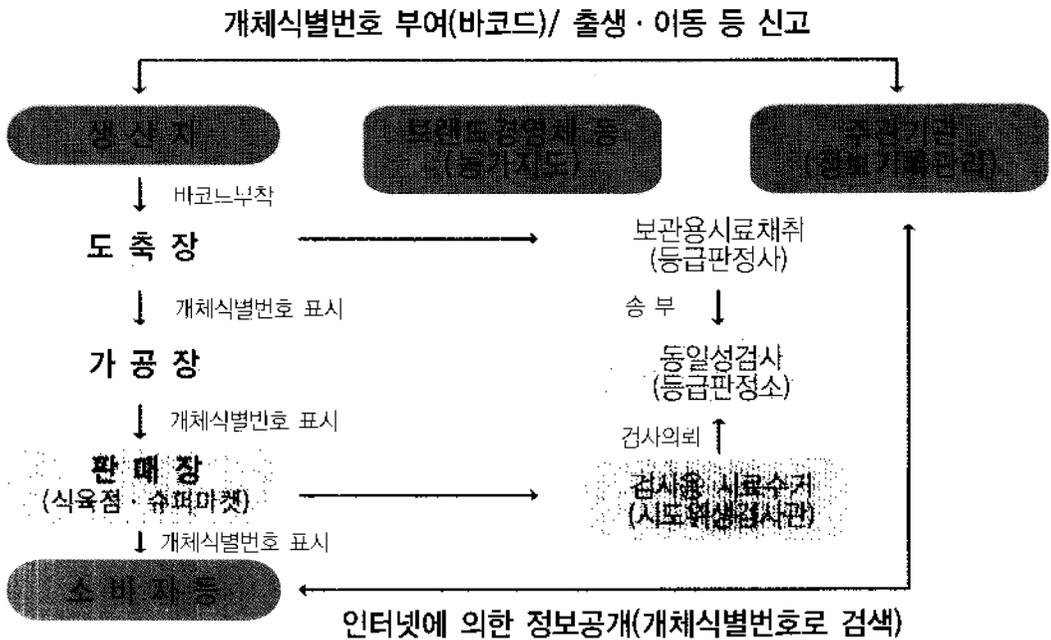
- 소와 관련된 정책자금 지원은 귀표장착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각 사업지침 개정
  - 브랜드 육성사업의 경우 추적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우선지원
- 유통단계 식별코드의 국제표준체계(EAN·UCC시스템) 도입 추진
  - 농림부의「농·축산물 생산이력 T/F팀」작업일정에 따라 추진

##### 다. 사업 추진체계

- 주관기관
  -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협중앙회(생산단계)와 축산물등급판정소(유통단계)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업무를 분담
    - 등급판정소(총괄): 전산시스템관리, 예산 편성·집행 등
    - 농협중앙회: 농가귀표 관리, 농가·브랜드경영체·조합지도 등
- 대상자 선정
  - 시범사업 참여 브랜드는 시·도의 추천을 받아 심사·확정(6~7월)
    - 농가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(단체)과 브랜드별로 연계할 도축장·가공장·판매장을 선정하여 신청
    - 심사는 브랜드 평가결과, 브랜드경영체와 사업장(도축장, 가공장, 판매장)간의 연계 가능성, 사업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DNA 동일성 검사
  - 도축장에서 보관용 시료 채취
    - 축산물등급판정소(등급판정사)
  - 판매장에서 검사용 시료 수거
    - 시·도 위생시험기관
  - 동일성 검사기관 : 축산물등급판정소(본부)



## 추진체계도



### 5. 단계별 추진 내용

#### 가. 가족식별 시스템 구축 (출생에서 도축까지)

##### ■ 귀표의 배포와 장착

- 귀표는 주관기관이 농가의 사육두수 및 기 부착 두수 등을 감안, 추가 소요분을 파악하여 사전에 농협조합, 브랜드경영체 등을 통하여 배포하고, 배포내역은 DB화 하여 관리
- 송아지 출생후 2주일 이내에 양쪽 귀 모두에 귀표를 부착
  - 귀표는 농가가 직접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

하되 고령농 등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영체, 농협조합 등에서 장착지원

- 한번 장착한 귀표가 떨어질 경우 동일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, 동일한 번호의 귀표를 다시 배포

##### ■ 기존 소의 개체 신고(소 개체식별대장 작성)

-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는 소유자(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고유번호, 사육지 등) 및 소유가족(개체식별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족종, 모개체식별번호) 현황을 신고
- 신고방법 : 브랜드경영체 또는 농가 등이 웹사이트에 전산 입력

### ■ 송아지 출생 신고

- 소유자(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고유번호, 사육지 등) 및 출생한 송아지 현황(개체식별번호, 출생일, 성별, 축종, 모개체식별번호)을 신고
- 신고 시기 및 방법 : 출생 후 2주일 이내, 웹사이트에 전산입력

### ■ 이동(전출·전입·폐사) 신고

- 양도·양수자,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, 이동사유(전출, 전입, 폐사), 이동일 등을 신고
- ※ 폐사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신고하여야 함
- 신고 시기 및 방법 : 1주일 이내, 웹사이트에 전산입력

### ■ 도축 신고

- 도축장 검사관은 귀표부착 여부 및 도축대상 소의 확인, 도축검사결과 처리
  -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이력 추적 시스템 관리대상에서 제외
  - 위생검사결과 합격여부 전산 입력
- 도축장의 영업자는 도축하는 소의 이력을 전산 조회하여 당해 소가 맞는지를 확인하고, 도축 후 개체식별번호 및 도축일을 전산 입력
- 도축장에 파견된 등급판정사는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, 등급판정내역(육질등급 및 육량등급 등)을 전산 입력

### 나. 유통단계 개체식별번호 전달(도축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)

#### ■ 도축장

- 도축장 영업자는 당해 소의 지육(내부갈비면)에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하여 부착하고, 이동에 따른 훼손을 방지
- 지육 판매시 개체식별번호와 매입자를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,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(거래명세서, 영수증 등)를 매입자에게 교부

#### ■ 가공장

- 가공장 영업자는 부분육(정육)과 포장에 도축된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하여 부착
-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와 매입자를 장부에 기록 보관하고,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매입자에게 교부

#### ■ 판매장

- 판매하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는 포장지에 표시하거나,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
- 음식점 영업자 등이 원할 경우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급

#### ■ 음식점

- 브랜드경영체 등이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에 포함 실시
- 당해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

